

# 주요 선진국의 獨占禁止法 運用의 최근 동향

신 광 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80년대에 들어와 경쟁적 시장의 힘이 資源配分과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非差別的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競爭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주요 선진국들도 경쟁정책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무역 자유화와 세계 경제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경쟁정책이 무역정책과 분리되어 있고, 일국의 경쟁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쟁정책과 별개라는 견해에 기초한 '고립적 경쟁정책'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平準화된 競爭의 場'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 및 경쟁정책의 國際規範化가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의 美日構造調整協議나 韓美經濟協力對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쌍무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협력·조정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國際規範化에 대처하면서 우리의 競爭法制와 運用方式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오랜 歷史를 가진 先進國들의 경쟁법제와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本稿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의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基盤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은 가장 엄격한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로서 이들의 경쟁법은 여러 나라의 경쟁법에 대한 모델이 되어 왔으며, 일본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 정책에 크게 의존한 나라로서 그 경쟁법이 독일의 경쟁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公正去來法의 모델이 되었던 나라이다.

## 1. 미 국

反트러스트政策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쟁정책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法(Sherman Act)과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法(Clayton Act) 및 FTC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세 연방 법률에 基盤을 두고 있다.<sup>1)</sup> 셔먼법은 카르텔, 독점을 초래하는 水平結合, 그리고 掠奪的 企業策略 등을 금지하려는 의도로, 클레이튼法과 FTC法은 독점적 지위의 유지·확보행위들을 그 始發段階에서 중지시키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은 실제 규정에 數가 적고 내용이 간략하면서도 광범하여 판례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法務部와 聯邦去來委員會에 의해 시행된다. 또한 50個州의 법무부장관들과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私人也 反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의 反트러스트政策은 1940년대에 이르러 그 운용의 기본틀이 확립되었으며, 1950~60년대에 斷片的 産業의 보전, 거래자유와 중소기업자의 보호 등 정치·사회적 목적들이 중시되면서 대기업의 가격 차별, 수직적 제한, 기업결합 등이 엄격히 규제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런 硬直的 法運用은 소규모 기업의 보호를 위해 경쟁 자체를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非效率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비판되었으며, 경제 효율 제고가 反트러스트의 유일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시카고학파의 견해가 확산되어 정책 당국과 법원의 호응을 얻기에 이르렀다.

1) 클레이튼法은 1936년의 Robinson-Patman Act, 1950년의 Celler-Kefauver Act, 그리고 1976년의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FTC法도 1938년의 Wheeler-Lea Act에 의해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2) 예컨대, 대법원은 Schwinn 사건에서 "제조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내어준 후에 그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當然違法的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United States v. Arnold, Schwinn & Co., 388 U.S. 379(1967).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反트러스트 정책 基調는 경쟁강화와 경제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선회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反트러스트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경제 효율의 극대화가 反트러스트의 기본 목적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 분석이 정부의 公訴事件 선택, 裁定될 주요 이슈의 결정, 그리고 행위의 경쟁 효과 논증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의 변화는 법원 의견과 정책 집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법원과 정책 당국은 가격 차별의 위법성 기준을 강화하고 경쟁대응 항변도 널리 인정하는 등 지배적 기업의 행위를 관대하게 취급하여 경쟁촉진을 도모하였다.

수직적 제한에 있어서는 Sylvania 判決<sup>3)</sup>을 서두로 合理原則으로의 反轉이 급속히 진행되어, 법원들은 대개 수직적 비가격 제한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책 당국도 공급자의 독립적 재판매가격 유지와 비가격 제한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또한, 寡占政策이 구조 규제로부터 카르텔 규제로 전환되어 기업결합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1940년대 이래 그 범위가 확대·강화되어 온 카르텔 규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反트러스트 哲學과 法理論의 변화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을 조성하였다. 먼저 反트러스트 정책의 약화에 기여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다음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법집행 인력이 감소되었다. 예를 들어, FTC는 1980년에 1,719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2년에는 964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둘째, 연방법원 판사들의 2/3 정도가 Reagan과 Bush 행정부에 의해 지명된 사람들로서, 보수적 판사들이 연방 사법부를 채우고 있다. 셋째, 합리 원칙의 적용 확대등으로 196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던 私訴가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넷째,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시장이 더욱 국제화되었는

바, 이는 관련 시장이 넓게 정의되고 시장 진입도 쉬운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력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反트러스트政策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다. 먼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벌과 형사기소 활동이 크게 강화되었다. 서면法上の 최고벌금액이 개인인 경우에는 35만 달러,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최고 징역형도 3년으로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형사의 법집행 노력도 강화되었다. 법무부 反트러스트局은 전례없이 많은 大陪審審次를 개시하였고, 여타 법집행 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우편·電信詐欺, 정부기관에 대한 虛僞陳述, 虛僞支拂請求, 偽證 등을 금지하는 법령들도 빈번히 이용하였다.

둘째, 反트러스트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1976년까지 전문직 업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反트러스트法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그 이후 이 '適用除外'는 크게 잠식되었다. 국가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가 축소되었고 보험업에 대한 적용 제외도 그 범위가 좁혀졌다.

셋째, 1985년 이후 州 法務長官들이 反트러스트 및 소비자보호 문제들에 대하여 법집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기업결합 분야에 주의를 집중하였는 바, 州가 제기한 기업결합 사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기 2건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21건에 이르고 있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외국시장 접근을 확보할 목적으로 교역 상대국의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自國 反트러스트法의 域外適用範圍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일본과의 構造調整協議에서 유통 구조, 배타적 거래 관행, 기업집단의 계열거래 등의 개선을 위한 독점금지법 운용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국제계약 신고제, 경품 규제, 적용

3) Continental T.V., Inc. v. GTE Sylvania Inc., 433 U.S. 36(1977).

제외 카르텔, 사업자 단체의 배제적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무부의 「국제사업 활동에 대한 반트러스트 집행 지침」(案)은 미국 반트러스트법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 행위와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국내 교역이나 대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反競爭의 行爲”라면 그 발생지나 관련 당사자들의 國籍에 무관하게 미국 반트러스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管轄權의 ‘影響理論’(effects doctrine)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과 경쟁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배경으로 ‘영향이론’ 채택의 정당성을 옹호·주장하고 있다.

## 2. 일 본

일본의 「私的獨占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獨禁法)은 일본 경제를 지배해 온 재벌을 해체한 후 경쟁적 시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 반트러스트법을 모델로 하여 1947년에 제정되었다. 同法은 1949년과 1953년에 완화의 방향으로, 그리고 1977년에는 정책집행의 범위와 강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정취인위원회(이하 公取委)가 거의 專屬的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제는 1953년의 개정에 의해 그들이 정해지고 현재의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시행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까지 獨禁法이 거의 운용되지 않아 法 자체가 유명무실하였다. 단지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대한 규제(특히 우월적 지위남용의 금지)를 통해 개별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獨禁法 運用은 1960년부터 서서히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물가 대책으로서의 독점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격 카르텔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단속, 적용 제외 카르텔 인가에 대한 신중한 취급 등의 시책이 강구되었다. 또한 不當表示나 過大景品附販賣가 성행하면서 소비자보호시책으로서의 獨禁政策도 중시되기 시작하여 1962년에는

「不當景品類 및 不當表示防止法」이 제정되었다.

카르텔 규제는 1974년의 석유 카르텔 사건으로 적발과 형사 고발에 의해 본격 개시되었으며, 1984년의 石油關카르텔 判事事件으로 最高裁判決에서 가격 협정에 대한 위법성 기준이 확립되게 되었다. 또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 제도가 1977년에 도입되어 가격 카르텔 규제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담합이나 수입제한 카르텔(一元輸入)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업계의 질서와 협조를 중시하는 談合性向이 남아 있다.

더욱이 일본은 獨禁法 적용제외를 빈번히 사용하여 왔다. 독일의 경우를 따라 일본의 적용제의 규정들은 수출입의 효율적 수행, 중소기업들의 규모경제 실현, 그리고 불황산업 합리화의 수단으로 카르텔 형성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이 독일과 다른 점은 특별입법에 의거하거나 경쟁정책 당국 이외의 기관이 승인한 카르텔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1952년의 「특정 중소기업의 안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작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獨禁法 적용을 제외해 주는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미국 하바드학파의 영향으로 197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서도 寡占規制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1977년 법개정을 통해 高度寡占對策으로서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와 가격의 同調的 인상에 대한 報告徵收制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의 적용이 시도된 적은 없으며, 가격의 同調的 引上에 대한 보고 징수 제도 寡占規制로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고 있다.

수평결합 규제는 私的 獨占의 예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복합결합 규제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持株會社의 금지 그리고 금융회사 및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 제한이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일반집중 규제로서 실시되어 왔다. 수직적 제한의 규제는 1984년의 東洋精米機事件에서 東京高裁判法과 시카고學派의 영향을 받아 신중히 이루어지게 되었다가, 최근에 美日構造調整協議에서 流通系列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시 專賣店

제를 중심으로 違法性 基準이 재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獨占禁止政策은 1989년 7월에 시작되어 1990년 6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美日構造調整協議를 계기로 그 법제와 운용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 사업자들간에 담합이 성행하여 외국 기업의 일본시장 진입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일본의 배타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獨禁法 운용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은 공식 결정의 적극 활용, 범운용의 투명성 확보, 公取委의 인원 및 예산 확충, 과징금 제도의 개선, 刑事罰의 적극적 활용, 손해배상청구 제도의 활성화, 정부프로젝트에서의 談合抑制 등을 약속하였다.

公取委는 獨禁法 집행 강화를 위해 심사체제를 확충하였는 바, 1990년부터 3년간 위법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심사 부문 인력이 129명에서 178명으로 40% 가량 증원되었고, 심사부 조직도 1989년의 17개에서 1992년의 23개로 늘어났다. 1991년 4월에는 과징금 인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獨禁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公取委는 과징금 제도에만 의존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하려던 방침도 전환하여 刑事罰을 적극 요구하기로 하고, 1990년 6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獨占禁止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한 方針」을 공표하였다.

公取委는 금후 (1)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 카르텔, 공급제한 카르텔, 시장 분할, 입찰 담합, 집단 보이콧 및 기타 위법 행위로서 국민생활에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중대한 事案, (2)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업계, 排除措置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중에 公取委의 행정 처분으로는 범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事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기로 하였다.<sup>4)</sup>

1992년 12월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刑事罰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獨禁法 改正案이 국회에서 통과되

어 199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래에 獨禁法 제89조는 제3조(私的 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와 제8조 1항(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獨禁法은 제89조의 죄에 한해 사업자에 대한 벌금형과 종업원등 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連動을 폐지하여 後者は 그대로 두면서 前者를 5백만엔에서 1억엔으로 인상한 것이다. 또한, 獨禁法의 손해배상 청구제도에 대한 미국의 개정 요구에 따라 일본은 「獨占禁止法에 관한 손해배상제도 연구회」의 정책 제안을 적극 실현하여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公取委는 재판 소로부터 손해액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기로 하고 재판소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방침도 공표하였다.

公取委가 獨禁法 위반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美日構造調整協議를 前後하여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증가하였다가 감소 경향을 보이던 심사건수와 처리건수가 1989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권고심결의 건수는 1989년부터 확연히 증가세를 보여 1992년에 27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금까지의 최다 처리건수(1982년의 19건)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최근에 사건처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징금 납부명령건수도 1989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2년과 1983년에 각각 8건과 10건을 기록했던 과징금 납부명령은 1984년 이후 2~6건 정도에 머물렀으나,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11건과 10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주로 과징금 제도에 의존하여 범운용을 해오던 公取委는 1991년 11월과 12월에 가격 카르텔을 이유로 영화비닐제 업무용 스트레치 필름(랩) 제조 8社와 各社 영업 담당자 15명을 고발하였고, 1993년 2월에는 社會保險廳 調達에서의 入札談合을

4) 일본은 1991년 1월 검찰 당국과 公取委 사이에 「고발문제협의회」를 설치하여 개별 사건의 고발과 관련한 문제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였다.

이유로 4개 인쇄회사를 형사고발하였는 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의 獨禁法 운용 강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3. 독일

**독**일의 경쟁정책은 1957년에 제정된 「경쟁제한 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이하 GWB)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同法은 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GWB의 집행권은 독립행정기관인 聯邦카르텔廳, 연방경제부장관, 州政府의 카르텔 담당 부처 등 세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데, 주로 聯邦카르텔廳이 관장·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司法制度를 통해 집행되나 미국 反트러스트法과는 달리 위법 행위 및 그 성격과 범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위법성 결정에 있어 司法府의 재량의 여지는 별로 없다.

聯邦카르텔廳은 법에 규정된 경쟁제한 행위들에 대하여 경쟁 촉진의 목적을 다른 경제적·사회적 목적들과 比較衡量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정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카르텔과 기업결합이 공익을 위해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예외적 허용 권한은 準司法的 기능을 가진 聯邦카르텔廳이 아니라 정치적 기관인 경제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즉, 연방경제부장관은 경쟁정책의 입안,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 종합적·장기적 업무를 수행하며, (1) 갑작스런 경제적 변화로 산업의 생존능력이 위협받는 경우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카르텔을 적용 제외해 줄 수 있고, (2) 사전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하여 '경제 전체에 대한 이익' 또는 '우선적 공공 이익'을 위해 聯邦카르텔廳의 금지조치를 뒤엎을 수 있다. 경제부장관의 카르텔 적용 제외 권한은 간혹 사용되어 왔다. 各州의 최상급 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州 카르텔 담당부처는 各州에서 발생한 사안을 관장하며, 私人是 GWB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래 독일의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대규모 공급자들의 출현

이나 존재를 허용하면서 그들이 중소기업자들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시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행위금지 규정들이 행위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입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자가 행하였다면 위법할 행위를 중소기업자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적용 제외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규모 경제를 실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成果規制(제22조에서의 행정적 가격 책정)를 규정하고 聯邦카르텔廳이 남용을 입증하면 경쟁적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EU 등의 경쟁법에서도 나타나지만 미국의 反트러스트法과는 명백히 대조되는 것이다.

GWB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체결한 수평적 계약이나 決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1백만 마르크 또는 경쟁제한 행위로 획득한 추가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反트러스트法과는 대조적으로 GWB는 카르텔의 일반적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두 부류의 카르텔-경쟁 과정을 개선하려는 카르텔과 관련 기업들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카르텔-이 聯邦카르텔廳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독일은 사업자들의 협조적 행위를 빈번히 허용하여 왔으나, 경제 발전이 지속되면서 시장 집중을 유발하고 카르텔을 조장하는 산업정책의 反競爭的 결과들에 대한 우려가 커져 경쟁법의 적용 제외 범위를 점차 좁히고 있다.

GWB 제22조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핵심 조항이다. 同條 제1항~3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4항은 그 남용 행위를 경쟁사업자에 대한 妨害的 濫用行爲(水平的 濫用行爲)와 前後 거래 단계에서의 掠奪的 濫用行爲(垂直的 濫用行爲)로 구분하고, 다시 後者를 가격 또는 조건에 관한 남용 행위와 가격 또는 조건의 분할 행위로 나누고 있다.

GWB 제24조는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

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개선이 시장 지배의 폐해를 상회한다는 것을 참가 기업들이 입증”하지 않는 한 聯邦카르텔廳이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업결합 규제가 도입된 것은 1973년의 GWB 제2차 改正時이며, 그후 기업결합 규제가 경쟁정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경쟁정책이 곧 기업결합에 대한 정책과 同一視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1976년, 1980년 및 1989년의 GWB 개정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의 중심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독일만이 집중도를 높이는 기업결합을 금지함으로써 시장 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으며, 다른 나라들은 대개 대규모 사업자가 국제시장에서 더 잘 경쟁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構造規制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시장구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영국, 스페인, 캐나다, EU 등에서 발전한 경쟁법의 분야가 바로 구조 규제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競争法 執行은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하는 단독 행위의 규제로 편중되어 왔다. ■

## 競争法 研究

### 제 1 권

1. 市場秩序政策과 民主主義/ 閔庚菊 2. 不當한 共同行爲 / 梁明朝 3. 再販賣價格維持制度/ 金英鎬 4. 不正競争禁止 法理의 發展/ 李相程 5. 最近 美國의 海運立法과 그 影響에 대하여/ 徐憲濟 6. 韓國 獨占規制法의 制定沿革/ 金贊鎭

### 제 2 권

1. 企業分割政策과 競争的 市場構造/ 金基台·韓壽龍 2. 獨占規制政策의 構造와 實際/ 柳時朝 3. EEC條約 제86조/ 權五乘 4. 混合企業結合의 競争制限의 效果/ 張勝和 5. 우 르과이라운드 지적 재산권 협상 타결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보완/ 徐憲濟 6.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 金貞完

### 제 3 권

1. 國際라이선스 契約의 規制에 관한 研究/ 梁明朝 2. 市場 支配의 事業者의 “價格濫用行爲”에 대한 規制基準/ 申昌善 3. EEC조약 제85조 제3항/ 權五乘 4. 獨占規制法上의 適用 除外/ 李奉儀 5. 미국 獨占禁止政策의 期間別 分析/ 李義榮

### 제 4 권

1. 서면 獨占禁止法의 形成課程研究/ 金基台·李義榮 2. 中小企業의 租稅支援制度 活用實態分析/ 高準基 3. 獨占規 制法의 域外適用/ 李奉儀 4. Multi-Market Mergers and a Probabilistic Approach under Anti-Merger Statutes of U.S. and Korea/ 張勝和 5. 유럽 競争法의 새로운 傾向 / Ulrich Immenga 6. 유럽공동체의 會員國에 있어서 共 同體法의 適用에 關하여/ Volkmar Götz

### 제 5-6 권

1. 不公正去來行爲와 消費者保護/ 權五乘 2. 社會的 市場 經濟와 憲法의 現實/ 閔庚菊 3. 消費者保護를 위한 現행 獨 占規制法規定과 問題點/ 申鉉允 4. 不公正 國際去來의 法 的 規制, 通商政策인가 競争政策인가/ 徐憲濟 5. 美國의 營 業秘密保護法理/ 鄭浩烈 6.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制度 的 改善方案/ 申光湜

## 韓國 競争法 學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대한교육보험빌딩 1714호

문의전화 (02)736-0145